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29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1. 14.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2025. 11. 1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5. 11. 26.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가. 개정이유

고성군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을 구체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정비

가) 주소정보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도로관리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도시계획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안 제6조제3항)

나) 당연직으로 규정된 소방, 경찰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위촉직으로 변경(안 제6조제4항)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3)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미반영[복지지원과-33223(2025. 8. 28.)호]

4) 기 타

가)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5-1427호

- 예고기간: 2025. 9. 1. ~ 2025. 9. 21.(20일간)

- 예고결과: 의견없음

나)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 개정 목적

본 개정조례안은 주소 정보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고성군주소정보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정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검토 내용

(안 제6조제1항)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과반수가 될 수 없도록 참여 비율을 제한하고, 제3항은 당연직 업무 소관 부서장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 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고성군주소정보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11. 26.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